

2006. 3. 15(수)  
제121회임시회제3차본회의

제천수상아트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 제천수상아트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 사 경 과

-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6. 3. 7. 제천시장
- 회 부 일 : 2006. 3. 7.
- 상 정 일 : 2006. 3. 15(제121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회의)

##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 가. 제안이유

- 청풍호반에 설치한 국내 최초의 다목적 수상공연장인 수상아트홀의 활용성을 높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코져 함.

### 나. 주요내용

- 제천수상아트홀 시설현황

시설명	위치	층별	세부명칭	주요구조	면적(㎡)	비고
제 천 수 상 아트홀	청풍면 교리 만남의 광장 앞 수면	지상1층	수상아트홀(선체)	철골조	1,320	L=44m, B=30m
		지상1층	보조바지선	철골조	130	L=13m, B=10m
		지상1층	수상아트홀 (진입부교)	철골조	234	L=39m, B=3m (2개소)
		지상1층	무대	철골조	130	
		지상1층	수상휴게실	철골조	100	
		지상1층	화장실(남,여 분리)	철골조	72	남=41㎡, 여=31㎡
		지상1층	연습실	철골조	136	
		지상1층	분장실(남,여 분리)	철골조	40	남=20㎡, 여=20㎡
		지상1층	창고	철골조	156	78㎡×2개소
				음향, 조명		1식

- 사업비 : 4,298백만원(국 969, 도 291, 시 3,038)
- 위탁운영대상 : 시설 및 프로그램
  - 시설명 : 제천수상아트홀
  - 시설 : 휴게실 【1층대기실, 100㎡(30평)】
    - 평 시 : 차, 음료, 건과류 등 판매시설 활용(휴게실 운영)
    - 공연행사시 : 대기실 활용
- 행사, 공연 등 프로그램 운영
- 수탁자 선정기준
  - 음향조명 등 기자재 조작 자격증소지자 기사 1명 확보
  - 전문적 공연이 가능한 음향 장비를 갖추고 상설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현지 배치
  - 매월 인지도가 높은 공연을 2회 이상 운영
  - 프로그램 및 공연섭외 능력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력이 있을 것
- 위탁관리기간 : 3년 이내
- 사용료 : 휴게실 감정평가액의 50/1000
- 유료공연시 수입액의 5%를 제천시에 납부
- 운영비 지원 : 없음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동수)

#### 【 法的檢討 】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공연법 제8조에서도 공연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行政的檢討 】

-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의 위탁의 필요성에서 수상아트홀을 청풍호반의 대표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마인드의 자유분방한 홍보 및 대외 섭외력과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이 필요한 바 시에서 이를 운영하기에는 전담인력의 배치 예산의 투입 등이 사실상 어려워 민간위탁이 절실함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다목적 수상아트홀의 주기능은 질높은 문화예술 공연과 다양한 관광 이벤트 행사인 만큼 수상아트홀의 무대, 분장실, 연습실, 휴게실, 음향시설, 조명시설, 관람석 등은 주요 시설물이며,
- 수탁자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무대, 분장실, 연습실, 휴게실, 음향 및 조명 시설, 관람석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데, 실제 위탁하는 시설은 휴게실(1층 대기실) 100㎡(30평)로 하고 사용료를 휴게실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의 50/1000을 납부토록하고, 유료공연시 수입액의 5%를 제천시에 납부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법규적 타당성 및 시행의 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 충분히 이해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람.
- 제천시 수상아트홀의 여러시설 중에서 실제로 민간위탁하는 시설물은 어느 것이며, 이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책정은 어떻게 결정할 계획이며, 제천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람.
- 아름다운 청풍호반에 국내 최초의 수상아트홀을 조성한 것은 제천시민들에게는 질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천관광의 이미지를 높임으로서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하는 체류형 종합관광지로 관광객 유입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제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용방안이 되도록 위탁시설대상 및 대부료 또는 사용료 적용의 타당성 위탁운영의 조건 및 수탁자 선정기준, 특히, 위탁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세심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 4. 질의 답변 요지

### 가. 질의요지

- 위탁운영대상에 프로그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최창규 의원)
- 집행부에서 민간위탁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기안도 하고 연구도 하고 검토하신 서류가 있는지?(최창규 의원)
- 민간위탁시설을 휴게실이라고 하면 조금 피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최창규 의원)
- 앞으로 수상공연장아트홀에 추가 시설을 위한 투자 계획이 있는지?(김남원 의원)
- 수상아트홀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있는지?(박종유 의원)
- 우리가 관광사업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인데 매월 2회정도 공연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김성진 의원)
- 11월4일날 준공이 됐는데 직영체제로 한다고 했을 때 연구를 해 보시고 또 이걸 위탁을 하게 한 연구결과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는 데 직영체제로 했을 때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검토하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있는지?(이재환 의원)

### 나. 답변요지

#### <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

-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수상아트홀에 설립목적과 다목적의 분야에 연관해서 상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공연이라든지 이벤트성행사도 프로그램도 포함됨.
- 기획을 해서 이걸 하겠다고 한건 사실상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을 직영부분으로 가느냐 민간위탁부분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시설을 설치하는 중간과정에서 업무보고도 드렸고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방향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함.

- 수상아트홀이라면 본체 전체시설하고 부대되는 분장실, 연습실, 음향, 조명 이런 것들을 통털어서 관련 시설로 보는 것이 의미상으로는 맞음. 그러나 위탁을 하는 부분에서 시설과 부지를 위탁하게 대상으로 했을 경우 위탁을 하게 되면 그냥 무상으로 위탁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공유재산임대료 산정을 했을 때 쉽게 평가를 하면 음향까지 포함해서 45억을 드린다고 하면 천분의 50으로 정하면 225,000천원이 나옴.  
그렇게 하면 사실상민간위탁을 모집을 해도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됨.
- 그 부분은 현재 조성이 다된 상황에서 추가로 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은 아직은 없음.
- 전화로도 문의가 오는 부분이 있고 제안서를 내보겠다는 사람도 있음.
- 기본적인 인지도가 높은 공연을 2회이상해야 된다는 부분은 활용의 연속성유지를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임.
- 작년 11월 4일 준공 이후에 운영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였음. 시행과정에서 직영으로 갈 것인가 위탁을 갈 것인가 방향성을 검토를 하면서 위탁부분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검토의견을 내서 내부변함이 없는 부분이고고 공무원들이 반복적이고 답습적인 경험적인 일은 상당히 잘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으나,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아이템을 내고 분방한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민간부분에 훨씬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인력도 이 시설을 직영을 한다고 하면 기획마케팅인력하고 보조하는 인력시설하고는 3명 정도의 별도의 배치가 정원상에 필요하다고 보겠음.  
인건비도 1억원 가까이 된다는 보는 부분을 감안하고 운영비부담도 기본적인 운영비외에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유치하고 하기에는 연간 2억 정도를 생각함.

## 5. 소 수 의 견

“ 없 음 ”

## 6. 토 론 요 지

- 제천수상아트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의 내용중 위탁하는 시설을 수상아트홀 전체로 하여 공연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목적수상아트홀의 설치목적과 부합시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김성진 의원)

## 7. 심 사 내 용

- 김성진의원외 2인 수정안 발의(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 수정안 표결결과
  - 출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가결(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 ”

## 9. 심사보고 붙임서류

1. 제천수상아트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끝.

## 제천수상아트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천수상아트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3. 위탁개요 ○ 위탁운영대상(시설 및 프로그램) 중 “시설  
• 휴게실(1층대기실) : 100㎡(30평)”을 “○ 시설 • 수상아트홀”  
로 한다.
- 안 3. 위탁개요 ○ 위탁운영대상(시설 및 프로그램) 중 “- 평시 :  
차, 음료, 건과류 등 판매시설 활용(휴게실 운영)”을 삭제한다.
- 안 3. 위탁개요 ○ 위탁운영대상(시설 및 프로그램) 중 , “- 공연  
행사시 : 대기실 활용”은 삭제한다.

## 수 정 안 대 비 표

동 의 안	수 정 안
<p>3. 위탁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운영대상(시설 및 프로그램)</li> <li>-----</li> <li>○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게실(1층대기실) : 100㎡(30평)</li> <li>- 평시 : 차, 음료, 건과류 등 판매시</li> </ul> </li> </ul> <p>설 활용(휴게실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행사시 : 대기실 활용</li> </ul> <li>-----</li>	<p>3. 위탁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운영대상(시설 및 프로그램)</li> <li>-----</li> <li>○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상아트홀</li> <li>(삭 제)</li> <li> </li> <li>(삭 제)</li> </ul> </li> </ul> <li>-----</li>